

(국민의힘, 용산2)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행정자치위원회 최윤희 의원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산2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최윤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조례에 규정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상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상설 위원회의 필요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개정의 주요 목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안전이 발생할 경우에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필요 시 수립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정책 추진의 유연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기존의 3년마다 기본 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 규정을 개선한 것입니다.

둘째,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여 필요 시 운영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넷째, 정기회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 발생 시에만 시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비상설 체계에 맞게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